

전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한다

맑은물사업본부, 안정적 용수 공급 등 위해 2022년까지 총사업비 25억원 투입 10년 주기 중장기 방향 제시

전주시가 10년 후에도 도시 전역에 수돗물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수도 정비 청사진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송준상)는 수도정비의 종합적인 계획과 효율적인 상수도 운영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총사업비 25억을 투입해 '전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상수도 시설을 합리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상수도 관망의 현재 상태를 파악해 개량계획을 수립하는 등 효율적인 상수도 시설 관리와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10년 주기 중장기 발전계획이다.

시는 오는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추진되는 이번 용역을 통해 용수사용량의 불균형 해소 방안과 복선화 등 송수관 안정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각종 개발계획을 고려한 용수 공급에 대비하고,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을 통해 송·배수관로의 관리상태 파악 및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먼저 시는 에코시티와 효천지구 등 신도시 개발로 인해 급수량이 집중된 지역에 대해서는 수돗물 공급 불균형을 현상으로 인한 용수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는 현재 전주시역 10개 배수지는 초

포분기와 반월분기의 2개 분기점을 거쳐 전주기 관역상수도에서 용수를 공급받고 있으나 신도시 개발지구인 에코시티와 효천지구에 용수를 공급하는 천마배수지와 효자배수지가 초포 분기를 거쳐 용수를 공급받고 있어 상대적으로 급수량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는 현재 추진 중이거나 향후 추진될 각종 개발계획에 대비해 완료 시 용수공급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상수도 배관상태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 △전주 전역으로 물을 보내고 빼내는 송·배수시설

에 대한 배관상태가 적정하게 구성돼 있는지 여부 △블록 내 수압이 균등한 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또 이를 토대로 특정시간대 물이 안 나오거나 수압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블록별 개량계획도 수립할 방침이다.

송준상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전주시민에게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상수도의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나갈 것"이라며 "상수도 수질개선과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기자

코로나과로로 전주시청 공무원자택서사망

신천지 전수조사로 야근 중 피로감 호소 후 귀가

'코로나19' 사태로 비상근무를 해오던 전주시청 공무원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27일 전주시와 완산경찰서는 이날 새벽 시청 총무과 행정직(7급) 공무원 A씨(42)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신천지 관련 전수조사 관련 업무를 하던 중 피곤함을 느껴 평소보다 이른 밤 11시 20분께 귀가했다. 귀가 후 A씨는 부인에게 "피곤하다"며 자택 작은방에서 잠이 들었고, 새벽 1시 20분경 다른 방에 있던 부인이 의식을 잃은 채 있던 것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다.

A씨는 최근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한 후,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고 동료 직원들과 근무를 해왔다. 이번 주 들어서는 코로나19 총괄대책본부상황실 행정지원 업무, 신천지 관련 업무 등에 매진하면서 새벽 1시가 넘어 퇴근해 왔다.

전주시청 관계자는 "A씨는 평소 모범적으로 근무해 왔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늦은 시간 퇴근하던 A씨가 전날 밤에는 피곤함을 느껴 좀 일찍 들어갔다"며 안타까워했다.

한편 A씨의 빈소는 예수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김윤상기자

전주시, 전국 최초 유기동물 재활센터 3월부터 운영

유기견 안락사 방지·입양문화 활성화로 동물복지 향상 위해

전주시가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해 안락사 위기에 처한 유기동물들을 위한 재활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민간에서 운영되는 유기동물 재활센터는 있지만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례는 전주시가 처음이다.

시는 유기견의 안락사를 방지하고 입양문화 활성화를 동물복지 향상을 시킬 수 있도록 오는 3월부터 '유기동물 재활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국내에서 연간 유기되는 반려동물은 약 12만 마리로,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짧게는 10일에서 길게는 약 두 달까지의 보호 기간 동안 이 지나도록 새주인을 찾지 못하면 안락사 되는 것

으로 알려졌다. 유기동물 재활센터는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10일의 분실 공고기간이 지난 후 분양되지 못한 유기견을 이송받아 약 2개월간 △기본훈련 △순치훈련(길들이기) △사회 적응훈련 △애견 미용 등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훈련 프로그램은 전문 훈련사가 맡는다.

시는 최소 4주 이상의 훈련 프로그램을 거친 유기견을 개인과 유치원, 어린이집, 요양원, 경로당 등 복지시설의 신청을 받아 무료로 분양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유기동물 재활센터를 통해 새롭게 반려견을 맞이하는 예비 반려인들을 위해 반려동물에 대한 기

본상식과 관련 법령,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할 때 지켜야 할 공공 예절인 '펫티켓' 등을 교육하는 시간도 마련, 반려동물이 다시 유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힘쓸 계획이다.

시는 유기동물 재활센터가 운영되면 유기견의 재입양률을 향상시켜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자연사하거나 안락사 되는 상황을 방지해 동물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동물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유기동물 보호센터로 지정된 10개의 동물병원과 유기견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유기동물에 대한 구조와 보호, 입양 등의 사업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또 반려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고 신속하게 주인을 찾을 수

있게 하는 반려동물 등록제도 동물판매업소, 반려인 등에게 집중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공개모집을 거쳐 효자동 '늘봄 유기견 재활센터'를 유기동물 재활센터 운영업체로 선정했다. 이 업체는 올 연말까지 유기동물 재활센터 운영을 맡게 된다.

양영규 전주시 동물복지과장은 "전국 최초로 운영되는 유기동물 재활센터 운영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올바른 반려동물 돌봄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기동물 입양을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 지정 유기동물 재활센터(063-221-9883)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기자



전주시보건소는 지난 26일 역학조사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할 보건소 직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전북대병원 예방의학과 권근상 교수와 함께 역학조사 실무교육을 사전 실시했다.

코로나19 역학조사반 확대 운영

전주시, 확진자 다수 발생 상황 대비 역학조사 실무교육 사전 실시

전주시가 신천지 대구교회 방문 등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 상황에 대비해 역학조사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주시보건소는 지난 26일 역학조사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할 보건소 직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전북대병원 예방의학과 권근상 교수와 함께 역학조사 실무교육을 사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비해 역학조사 준비사항과 역학조사 방법 등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 진행됐다.

확대된 역학조사반은 확진자가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며, 이동경로 상의 접촉자를 확인해 방역, 접촉자 관리 전담반에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시는 신속한 방역의 추진과 함께 감염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시는 현재 각 6명으로 구성된 3개의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확진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역학조사반을 10개까지 확대·운영해 코로나19 대응에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소독에도 집중해 대응태세를 견고히 유지할 것"이라며 "시민여러분께서는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수칙 실천에 더욱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육상경기장·야구장 건립사업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드림포레스트' 선정

종합스포츠타운으로 조성되는 전주 월드컵경기장 주변에 들어설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의 운곽이 드러났다.

전주시는 27일 '전주 육상경기장 및 야구장 건립사업 설계공모'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주)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의 '드림포레스트'를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이번 설계공모는 현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의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으로 이전·신축함으로써 해당 지역을 종합스포츠타운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됐다.

총 3개의 작품이 출품된 이번 설계공모는 심사 전 과정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가운데 천만그루 정원도시의 모티브를 살린 디자인과 전주월드컵경기장 등 주변과 어우러지는 설계를 담은 '드림포레스트'가 최종 당선작으로 결정됐다.

특히 이 설계안은 심사위원들로부터 "인면디자인의 상징성이 전통문화역사도시인 전주의 이미지에 부합하며, 전주시의 슬로건인 천만그루나무를 연상하게 하며, 기능별·층별 계획이 전체적인 동선과 경기관람에 유효하

며, 외부공간과의 연계가 뛰어나다"라는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에 따라 당선작을 토대로 오는 3월부터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 약 12만㎡부지에 1만5000석 규모의 1종 육상경기장과 8000석 규모의 야구장을 건립하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후 시는 내년 초 공사에 착공, 오는 2023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설계공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의 전 과정을 이번 공모에 참여한 모든 건축사사무소 관계자와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특히 일반 시민과 건축전문가 등 누구나 투명하게 설계안 발표와 심사, 결과 등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전주시 공식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했다.

시는 생중계된 이번 설계공모 심사를 통해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것은 물론, 이번 공모 참가자뿐만 아니라 향후 공모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지역건축사 등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해당 공공건축물의 설계 의도를 시민들



전주육상경기장 마스터플랜 조감도.

에게 알려 향후 이곳을 이용할 시민들이 건축물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공공건축 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해 기획 단계부터 시민, 전문가, 총괄조정건축가 등이 참여하는 지문단을 구성하는 한편,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설계공모 운영안

을 시행해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신축은 전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종합스포츠타운으로 북부권을 발전시키는 성장 거점이 될 것"이라며 "이 기회를 통해 스포츠산업과 시민들의 체육복지, 건축도시로서의 위상도 함께 세워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상기자



전주시설공단은 노송천 공영주차장 이용객들의 불편해소와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해 현행 1개 차량 출구를 2개소로 확대해 운영한다.

노송천 공영주차장 차량 출구 2개소로 확대

전주시설공단, 이용객 편의 위해 양방향으로 출차 가능

전주시설공단(이사장 백순기)은 노송천 공영주차장 이용객들의 불편해소와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해 현행 1개 차량 출구를 2개소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노송천 공영주차장은 팔달로와 노송천 북계도로 등 2개 방향에서 차량 진입이 가능하지만 출차는 팔달로 방향 1개소로만 가능한 구조다.

이 때문에 북계도로 인근 상가 상인들은 물론 이용객들은 먼 길을 돌아

상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백순기 이사장은 "노송천 공영주차장 출구 확대로 인근 상가 상인 및 고객들의 이용 불편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이용객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고 만족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단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설공단은 전주시로부터 20개 유료주차장과 60개 무료주차장을 수탁해 운영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헌법재판소, "전두환 추징법 헌법 어긋나지 않아"

전직 대통령을 지냈던 전두환씨의 불법 재산 추징을 위해 마련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인 일명 '전두환 추징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서울고법이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 9조2항에 대해 제정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27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법외 제3자가 범죄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해 추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에 대하여 "해당 조항의 입법 목적은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보장하고, 불법재산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제3자에게 범죄가 인정됨을 전제로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게 아니라, 특정공무원 범죄를 범한 범인에 대한 추징판결의 집행 대상을 제3자가 취득한 불법재산 등 예까지 확대한 것"이라며 "확정된 형사판결의 집행 절차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제3자에게 추징 판결 집행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거나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힐 기회를 주게 되면 제3자가 또다시 불법재산 등을 처분해 집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제3자가 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는 등 사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 또한 있다며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법원의 사전 관여 없이 제3자 귀속재산에 대해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할 점만으로 해당 조항이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특정공무원범죄로 취득한 불법재산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며 "해당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제3자가 받는 불이익이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뉴시스